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

## 교육 신청 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장과 종사자 (대상 기관 참고)

## 교육 목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에 대한 이해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인식
- 신고의무자의 역할 수행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참여

## 교육 일정

- 2022년 3월 ~ 12월

## 교육 방법

- 대면/비대면 교육

##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이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해

## 교육 비용

- 무료 /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www.tacteen.net>
- 개인 및 단체(교육 인원 30명 이상) 신청 가능

## 문의

- 070-4077-3860 또는  
[tacteenedu@naver.com](mailto:tacteenedu@naver.com)

본 교육은 여성가족부  
'2022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어떤 때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 어떻게 해야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성범죄 경력조회는 매년 해야 하나요?
- 출근 첫 날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도 되나요?
- 학교, 청소년센터 등에서 성인 대상 특강을 진행할 때도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요?
-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뭐가 있나요?



## 교육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취업제한 기관(2022.01.13 기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위탁 교육기관(대안학교, 해맑음센터 등)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제주국제학교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  
합병원)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  
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  
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제2호의 교  
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  
원시설, 제17조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1조제1호 청소년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재  
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  
활센터 등)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제9호가목 및 나  
목의 체육단체(대학체육회, 시도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  
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위탁 교육기관  
(대안학교, 해맑음센터 등)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기술대  
학,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제주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 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1조제1호 청소년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제17조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  
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의료인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  
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박물관, 공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과학전시관,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도서관 등)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